

화성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6. 이용운 의원 등 7명

나. 회 부 일 자 : 2023. 10. 10.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10. 23.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이용운 의원)

가. 제안이유

- 본 제정안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현장해설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알 권리의 한 내용인 정보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데 입법 목적이 있음.

나. 주요내용

- 현장해설의 정의 (안 제2조).
-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의 내용 (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조례안은 현장해설사를 교육·양성하고, 우리 시와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 현장 등에 이들을 파견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이해를 돕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의 범위를 특정하고 활성화에 이바지한 자들에 대한 표창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검토결과, 행사 현장 등에서 자칫 소외되어 행사 내용의 전달이 원활치 않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본 조례안을 통하여 문화격차를 완화하고 더 나아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참여형)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0. 10.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10. 23.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장애인복지과장 박재훈)

가. 제안이유

☐ 추진 필요성

- 본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보급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한 사업임.
- 장애인복지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시설)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전문성 제고 및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지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 내용

- 배치기관 발굴 및 연계
- 참여 계약 체결 및 전산등록
- 직무배치 및 직무교육, 기본교육 실시
- 근태관리 및 보수지급, 사업평가

☐ 장애인일자리 위탁사업 개요

구 분	수행기관	사업량	비고
복지일자리(참여형)	민간위탁(2개 기관)	1개 기관당 40~45명	총 85명

*연간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사업량은 변동될 수 있음.

☐ 위탁 계획

- 위탁기간: 2024. 1. 1. ~ 2025. 12. 31.(2년)
- 위탁자의 자격: 사회복지법인(시설) 및 비영리민간단체
- 위탁기준 및 선정방법
 - 화성시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선정: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선정위원회 평가:
수행기관의 전문성, 사업수행능력 및 의지,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향후 추진계획

- 2023. 11. 민간위탁 모집 공고 및 접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
- 2023. 12. 수탁기관 협약 체결
- 2024. 01. 민간위탁 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동의안은, 상대적으로 취업의 기회가 부족한 장애인들에게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 선정을 통하여 장애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직업훈련 기회와 직업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더 나아가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접근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6. 이해남 의원 등 7명

나. 회 부 일 자 : 2023. 10. 10.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10. 23.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이해남 의원)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화성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데 제정의 목적이 있음.

나. 주요내용

-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사업 (안 제5조).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등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조례안은, 거동이 불편하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발의된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5년마다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처우개선 사업의 범주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 검토결과,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개선과 권리보장을 통해 돌봄의 질을 높이고,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증대가 예측됨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수급 안정성과 공공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0. 10.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10. 23.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위생정책과장 송경수)

가. 제안이유

- 2023. 12. 31.자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함백산추모공원의 건립·운영과 주민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 12. 31.에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5년간 연장하려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등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하여 상위법과 배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아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0. 10.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10. 23.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아동친화팀장 김현희)

가. 제안이유

-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으로 사회적응이 힘든 아동에게 심리치료를 위하여 설치된 화성시 아동상담소의 민간위탁기간이 2024. 4. 30. 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추진근거

- 화성시 아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수탁자 선정) 및 제7조(위탁계약기간)
-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시설현황

- 시 설 명: 화성시 아동상담소
- 위 치: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146, 어린이문화센터 4층
- 시설규모: 251.16㎡(사무실, 놀이치료실, 미술치료실, 집단상담실 등)
- 운영인력: 7명(소장 1, 사회복지사 1, 임상심리사 1, 치료사 4)

□ 위탁사무

- 조기검진, 선별검사, 심리상담 등 상담·치료 사업
- 예방교육을 통한 마음건강 인식개선 사업 운영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연구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사업

□ 위탁계획

- 위탁기간: 2024. 5. 1. ~ 2029. 4. 30.(5년)
-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 위·수탁 조건 위반 및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위탁취소 가능
- 위탁운영원칙
 - 토지 및 건물사용: 무상사용
 - 지원예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상담·치료 등)
- 연간 지원예산(안): 454,519천원
 - 인건비 348,942천원(기본급 및 제수당 등)
 - 사무비 22,437천원(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수용비 및 수수료 등)
 - 사업비 83,140천원(상담·치료사업, 느린학습자 조기검진 지원, 홍보비 등)

□ 위탁일정

- 2024. 2.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 2024. 3.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 2024. 4. 위·수탁 협약체결
- 2024. 5. 민간위탁 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동의안은 화성시 아동상담소의 위탁계약기간이 오는 2024. 4. 30.자로 만료됨에 따라 다시금 5년간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심리 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다각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사회적응을 용이하도록 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0. 10.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10. 23.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여성다문화과장 박노영)

가. 제안이유

☐ 민간위탁 필요성

- 민간위탁 선정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외국인주민 서비스 전문성 검토, 행정 효율화를 위해 법인·단체에게 사무를 위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화성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10조 (설치 및 운영)
-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대상사무기준 등)
-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민간위탁 동의)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 내용

- 외국인주민의 정착 지원을 위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 외국인주민을 위한 고충, 생활, 법률, 취업 등 상담
- 외국인주민을 위한 응급구호 및 의료지원
- 외국인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체육활동
-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 92-23
- 시설규모 : 지하1층, 지상 3층(연면적 1,830.99㎡, 부지면적 1,052㎡)

○ 지원시설 :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구 분	주 요 시 설	면 적(m ²)
지상 3층	- 다목적실, 카페테리아, 샤워실, 탈의실	384.12
지상 2층	- 쉼터, 전산실, 교육실, 도서관	403.14
지상 1층	- 사무실, 상담실, 전시실, 교육실, 관리실	530.58
지하 1층	- 주차장, 기계·전기실	513.15

○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건물전경)



□ 민간위탁기간 : 2024. 3. 1. ~ 2025. 12. 31. (22개월)

□ 수탁자 선정방식

- 신청자격 : 센터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 및 공신력,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 선정 (※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 후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조례 제5조) 결과 : 적정

- 외국인주민의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지식 필요
- 센터를 이용하는 외국인주민의 편리성을 위한 탄력적 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 위탁이 적절하다 판단

□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민간위탁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24년	2025년	비고
민간위탁금	3,498,610	1,731,985	1,766,625	

○ 민간위탁시설 조직구성

(단위 : 명)

구 분	계	정 규 직			계약직
		센터장	팀장	팀원	
인 원	20	1	3	8	8

□ 향후 추진계획

- 2023. 10. 민간위탁 의회 동의
- 2023. 11. 민간위탁 모집공고 및 접수
- 2023. 11.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
- 2023. 12. 민간위탁 협약체결
- 2024. 3. 민간위탁 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동의안은,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의 운영을 2024. 3. 1.부터 2025. 12. 31. 까지 22개월간 민간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을 통하여 관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향후 인구정책의 일환으로써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다문화·외국인주민 공동체 활동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0. 10.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10. 23.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여성다문화과장 박노영)

가. 제안이유

☐ 민간위탁 필요성

- 다문화·외국인주민의 자율적인 참여, 공동체 활성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사무를 위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화성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10조 (설치 및 운영)
-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대상사무기준 등)
-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민간위탁 동의)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 내용

- 다문화·외국인주민 공동체 활동공간 관리 및 사업계획 수립·시행
- 외국인주민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
- 문화다양성의 이해와 가치 확산 및 교육
- 외국인주민을 위한 고충, 생활, 법률, 취업 등 상담
- 그 밖에 외국인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화성시 향남읍 3.1만세로 1113, 지하1층
- 시설규모 : 지하 1층 (276.3㎡)

○ 주요시설

구 분	주 요 시 설	면 적(m ²)
지하 1층	커뮤니티, 공유주방, 회의실, 상담실, 사무실 등	276.3

○ 문화더함공간 ‘서로’ (건물전경)



□ 민간위탁기간 : 2024. 1. 1. ~ 2025. 12. 31. (24개월)

□ 수탁자 선정방식

- 신청자격 : 센터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 및 공신력,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 선정 (※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 후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조례 제5조) 결과 : 적정

- 외국인주민의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지식 필요
- 센터를 이용하는 외국인주민의 편리성을 위한 탄력적 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 위탁이 적절하다 판단

□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민간위탁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24년	2025년	비고
민간위탁금	373,801	185,050	188,751	

○ 민간위탁시설 조직구성

구 분	계	정 규 직			계약직
		센터장	팀장	팀원	
인 원	3	1	-	2	-

□ 향후 추진계획

- 2023. 10. 민간위탁 의회 동의
- 2023. 11. 민간위탁 모집공고 및 접수
- 2023. 11.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
- 2023. 12. 민간위탁 협약체결
- 2024. 1. 민간위탁 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동의안은, 다문화·외국인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동체 활동공간에 대한 운영을 2024. 1. 1.부터 2025. 12. 31.까지 2년간 민간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을 통하여 외국인들의 문화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유지하는 데에 본 민간위탁이 주효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여성다문화과)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0. 10.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10. 23.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여성다문화과장 박노영)

가. 제안이유

☐ 출연배경

- 1) 여성 능력개발을 통한 경쟁력 향상 및 사회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청소년의 활동과 건전한 육성을 진흥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대처를 통하여 여성과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의 맞춤형 정책 개발 및 특화사업 발굴, 지역 내 여성·가족·청소년 관련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 등 재단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 및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함

☐ 출연목적(필요성)

- 1) 화성시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활동 및 건전한 육성을 진흥함으로써 여성과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2) 재단의 주요사업
 - 가) 여성·청소년·가족 분야의 맞춤형 정책 연구 및 개발
 - 나) 여성·청소년·가족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
 - 다) 여성의 능력개발 지원 사업 및 여성 일자리 사업 추진
 - 라) 청소년 건전 육성, 청소년 활동 진흥 및 보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 마) 여성·청소년·가족 분야 위탁시설 운영

※ 출연근거(관련법령 또는 조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3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생략)

- ②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나. 주요내용

□ 사업내용

- 1) 여성·가족 분야의 맞춤형 정책 연구 및 개발:
여성과 가족분야에 대한 정책적 수요 증가에 따라 여성과 가족 정책의 연구 개발
- 2) 여성·가족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
여성·가족 분야 사업 추진과 연관이 있는 다양한 민·관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을 통해 사업의 시너지 효과 달성
- 3) 여성의 능력개발 지원 사업 및 여성 일자리 사업 추진:
맞춤형 교육운영과 평생학습 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 질 향상 및 이용 활성화로 여성경제활동 촉진

□ 주요사업

- 1) 청렴교육 및 포상금 제도 운영

○ 사업내용

- 청렴문화 조성 및 청렴정책 활성화를 위해 대내·외 청렴 홍보 활동 추진
- 사내 전산망으로 반부패·청렴 관련 교육 콘텐츠 제공하여 임직원 청렴교육 상시 학습
- 청렴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하여 재단 내 우수 직원 및 부서 포상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 사업비 : 20,210천원

2) 인권경영 체계 구축 및 활동 강화

○ 사업내용

- 재단의 인권경영 정책 실행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기구(인권경영위원회) 운영
- 임직원 대상 인권 의식 함양 교육을 통해 재단 내 인권 존중 문화 확립
- 인권영향평가로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재적·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하여 재단의 지속가능 발전 도모
- 공공기관 인권경영을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반영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 사업비 : 17,710천원

3) ESG전략기획운영

○ 사업내용

- 재단에서 진행되는 사업, 정책, 프로그램 등을 온라인 및 소식지로 발간하여 홍보
- 보안장비(방화벽장치) 내용연수 초과 및 유지보수기한 만료에 따른 구입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 사업비 : 152,892천원

4) 찾아가는 양성평등 문화 인식개선-화답 양성평등 낭독극단

○ 사업내용

- 양성평등 활동가인 화답 활동가들이 낭독극단을 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성 평등 인식개선 관련 낭독극을 공연하고 함께 참여하여 양성평등 문화에 대해 공유하는 장 마련

○ 사업기간 : 2024. 3. ~ 2024. 11.

○ 사업량 : 화답낭독극 단원(8명), 화성시민 청중(400명)

○ 사업비 : 20,000천원

5) 생애주기별 양성평등 가족교육

○ 사업내용

- 생애주기별 다양한 가족의 특성을 반영한 양성평등 교육 및 세대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양성평등하고 건강한 가족 문화 조성

○ 사업기간 : 2024. 5. ~ 2024. 10.

○ 사업량 : 화성시 관내 부부, 조부모(총 16회, 320명)

○ 사업비 : 11,000천원

6) 생활 속 양성평등 문화 확산 캠페인

- 사업내용
 - 양성평등 문화 조성 및 의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
 - 양성평등 피켓전시, 퀴즈풀기, 나의 양성평등 지수 자가 진단 등 운영
- 사업기간 : 2024. 3. ~ 2024. 11.
- 사업량 : 화성시민 520명
- 사업비 : 2,800천원

7) 다양한 가족 맞춤 지원사업(청년기 여성 1인 가구 대상)

- 사업내용
 - 기본적인 셀프 집수리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여 1인 여성청년가구의 역량 강화 및 프로그램을 통한 교류 및 유대관계를 이끌어 냄
 - 스스로 집을 수리하려는 청년기 여성 1인 가구를 도와 비용 절감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1인 가구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
- 사업기간 : 2024. 3. ~ 2024. 5.
- 사업량 : 화성시 관내 혼자 사는 청년기 여성 1인 가구 또는 예비 1인 가구 60명
- 사업비 : 2,230천원

8) 다양한 가족 맞춤 지원사업(중장년기 여성 1인 가구 대상)

- 사업내용
 - 기본적인 셀프 집수리 이론과 기술을 배우고 이를 매개로 중장년기 여성 1인 가구의 유대 및 교류 활동을 이끌어 냄
 - 스스로 집을 수리하려는 중장년기 여성 1인 가구를 도와 비용 절감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1인 가구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
- 사업기간 : 2024. 6. ~ 2024. 8.
- 사업량 : 화성시 관내 혼자 사는 중장년기 여성 1인 가구 또는 예비 1인 가구 60명
- 사업비 : 2,230천원

9) 우리가족 생태체험

- 사업내용
 - 생태계의 이해 교육 및 생태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어촌체험, 목장 체험을 통한 의미 있는 가족 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 2024. 3. ~ 2024. 11.
- 사업량 : 관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 40가족 (3인 기준 120명)
- 예산액 : 5,200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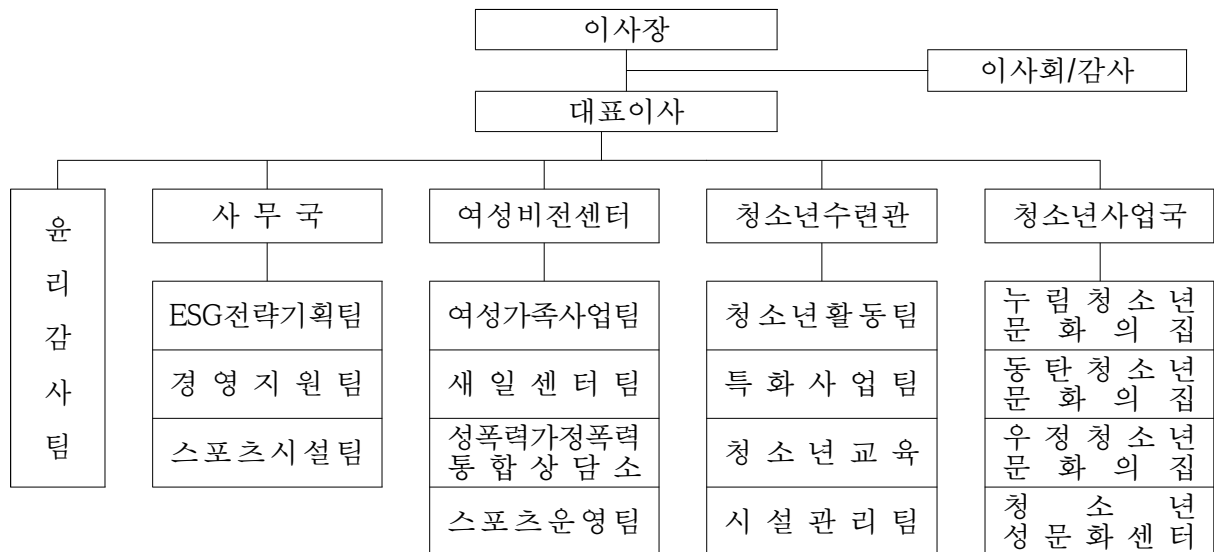
□ 출연 예산액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도 예산액	2023년도 예산액	증감액	비 고
합계		2,875,752	4,017,834	△1,142,082	
출연 (여성 다문화과)	소계	2,786,622	2,852,058	△65,436	
	인건비	1,556,716	1,622,092	△65,376	- 대표이사 보수 및 제수당 - 재단필수인원(감사, 기획, 경영 지원) 직원 보수 및 제수당 - 기간제근로자(휴직대체인력) 보수 및 제수당
	운영비	995,634	970,224	25,410	-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 - 기관운영 일반수용비
	사업비	234,272	259,742	△25,470	- 윤리감사팀, ESG전략기획팀, 여성가족사업팀
출연 (청년 청소년 정책과)	소계	89,130	1,165,776	△1,076,646	
	인건비	-	359,559	△359,559	- 청소년사업국장 및 특화사업팀 직원 보수 및 제수당 - '23년 출연금 잔액(잉여금)으로 편성(238,347천원)
	운영비	-	348,142	△348,142	- 특화사업팀 행정운영경비 - '23년 출연금 잔액(잉여금)으로 편성(10,068천원)
	사업비	89,130	458,075	△368,945	- 특화사업팀, 청소년활동팀, 청소년교육팀 - 사업비 일부(159,500천원) '23년 출연금 잔액(잉여금)으로 편성

□ 기타 참고사항

- 1) 여성분야(여성다문화과) 및 청소년분야(청년청소년정책과) 각각 편성,
출연동의안 별도 제출
- 2) 위탁사업 관련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는 공기관 등에 관한 위탁사업비로 편성
- 3)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일반현황
 - 가) 주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5
 - 나) 설립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
 - 다) 설립형태 : 출연기관(재단법인)
 - 라) 설립허가일 : 2016. 11. 22.(설립등기 2016. 11. 30.)
 - 마) 기본재산 : 300백만원
 - 바) 조 직 도 : 2국 1센터 1관 16팀



사) 국·센터 주요업무

국·센터	주요업무
윤리감사팀	○ 감사 및 조사업무, 윤리경영 및 인권경영 관련 업무 ○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복무 및 상벌 ○ 청렴 및 부패 방지 업무
사무국	○ 주요업무계획수립, 예산관리, 이사회운영, 재단 전산관리 ○ 인사, 노무, 계약, 회계, 직원복지, 교육 ○ 모두누림센터 스포츠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물 안전관리
여성비전센터	○ 여성·가족정책사업 운영, 평생교육 프로그램운영 ○ 취업연계 및 직업상담관리,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 성폭력·가정폭력 상담 및 예방에 관한 홍보 ○ 유엔아이센터 스포츠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수련관	○ 청소년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지역네트워크 구축 ○ 청소년 참여, 교육, 문화 등 청소년활동사업 운영 ○ 청소년축제, 진로박람회 등 대규모 사업운영 ○ 유엔아이센터 빙상장 운영 및 시설물 안전관리
청소년사업국	○ 청소년 참여, 교육, 문화 등 청소년활동사업 운영 ○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놀터 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동의안은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나아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고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4년도 사업 추진 시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시 재정에서 출연하는 것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출연예산액은 27억 8천 6백만원으로, 2023년 대비 6천 5백만원 감소하였으며, 계획한 사업내용이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는 재단의 사업범위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 출연금 중 인건비와 사업비가 축소되는 반면 운영비는 증가함에 따라,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청년청소년정책과)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0. 10.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10. 23.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

가. 제안이유

☐ 출연배경

- 1) 여성 능력개발을 통한 경쟁력 향상 및 사회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청소년의 활동과 건전한 육성을 진흥함으로써 여성과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는 바,
- 2)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분야의 맞춤형 정책 개발, 지역 내 청소년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건전한 청소년 육성·활동 진흥, 보호·복지 증진 등 재단 고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함

☐ 출연목적(필요성)

- 1) 화성시 청소년 특성에 맞는 정책 연구 개발 및 청소년의 활동을 진흥함으로써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복지 향상 및 급변하는 사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재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2) 재단의 주요사업
가) 청소년 정책 연구 및 개발:
화성시 청소년 인구 증가에 따른 맞춤형 청소년 정책의 연구개발을 통한 청소년 역량강화 및 권리증진 기여

나) 청소년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

청소년 분야 사업 추진과 연관이 있는 다양한 민·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청소년활동 환경 구축

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청소년 활동 진흥 및 보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우리 시 청소년의 욕구와 정책을 반영한 청소년 문화·복지활동 및 참여환경 조성

3) 따라서 상기와 같은 각종 재단의 주요사업 추진과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 출연금 교부가 필수적임.

□ 출연근거(관련법령 또는 조례)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2)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생략)

- ②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나. 주요내용

☐ 청소년정책연구개발

- 1) 사업내용 : 청소년실태조사연구를 통해 화성시 청소년의 기초현황 파악 및 청소년 정책연구를 통한 청소년사업 개발, 발굴 자료 확보
- 2) 사업기간 : 2024. 1. ~ 2024. 7.
- 3) 사업대상 : 관내청소년 2,000명
- 4) 예 산 액 : 20,000천원

☐ 화성시청소년통합시스템 운영

- 1) 사업내용: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교사를 망라하는 청소년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여 수요자(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반응형 홈페이지 운영
- 2)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 3) 사업대상 : 화성시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교사 등
- 4) 예 산 액 : 25,000천원

☐ 청소년네트워크 구축

- 1) 사업내용 : 청소년네트워크 담당자 정기회의, 청소년지도자 전문교육, 청소년 네트워크 캠페인, 기관장 간담회 등
- 2)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 3) 사업대상 : 화성시 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 4) 예 산 액 : 10,000천원

☐ 화성시청소년지도자대회 운영

- 1) 사업내용 : 청소년지도자 윤리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수여, 상호교류 시간 등 교류의 장 형성
- 2)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 3) 사업대상 : 화성시 청소년지도자 및 관계자 100명
- 4) 예 산 액 : 10,000천원

☐ 청소년정책포럼

- 1) 사업내용 : 화성시 지속가능한 청소년정책실현과 방향성 제시를 위한 포럼 개최
- 2) 사업기간 : 2024. 8. ~ 2024. 10.
- 3) 사업대상 : 청소년, 시설·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 학부모 등 40명
- 4) 예 산 액 : 10,000천원

□ 청소년정책제안대회

- 1) 사업내용 : 청소년정책제안, 본선진출팀 워크숍, 서류 및 본선심사, 본선대회 운영, 온라인 생중계, 자료집 제작 등
- 2) 사업기간 : 2024. 7. ~ 2024. 12.
- 3) 사업대상 : 관내 청소년 30개 팀(100명)
- 4) 예 산 액 : 14,500천원

□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 1) 사업내용 : 청소년의 달 기념 슬로건 공모 및 게시, 자랑스러운 청소년 표창, 축하공연 등
- 2) 사업기간 : 2024. 5. (1회)
- 3) 사업대상 : 화성시 청소년 2,000명 및 시민
- 4) 예 산 액 : 70,000천원

□ 화성시청소년골든벨

- 1) 사업내용 : 정주의식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한 화성시 역사, 문화 등 분야별 퀴즈대회, 사전·사후 이벤트 운영
- 2) 사업기간 : 2024. 10. (1회)
- 3) 사업대상 : 전국 11 ~ 19세 청소년 100명
- 4) 예 산 액 : 10,000천원

□ 청소년참여예산제

- 1) 사업내용 : 청소년의 주도성 및 주인의식 확대를 위한 청소년참여예산 기획단 모집 및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2) 사업기간 : 2024. 3. ~ 2024. 11.
- 3) 사업대상 : 관내 청소년 60명
- 4) 예 산 액 : 35,000천원

□ 청소년 e-스포츠 대회

- 1) 사업내용 :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과 진로 탐색 기회 부여를 위한 전국 청소년 e-스포츠 대회 운영
- 2) 사업기간 : 2024. 10. (1회)
- 3) 사업대상 : 전국 13세~18세 청소년 400명
- 4) 예 산 액 : 38,130천원

□ 청소년 3:3 농구대회

- 1) 사업내용 : 청소년기 건강한 또래 문화 형성 및 신체적·정신적 향상 기회 제공을 위한 전국 3대3 농구대회 운영
- 2) 사업기간 : 2024. 10. (1회)
- 3) 사업대상 : 전국 13세~18세 청소년 160명
- 4) 예 산 액 : 6,000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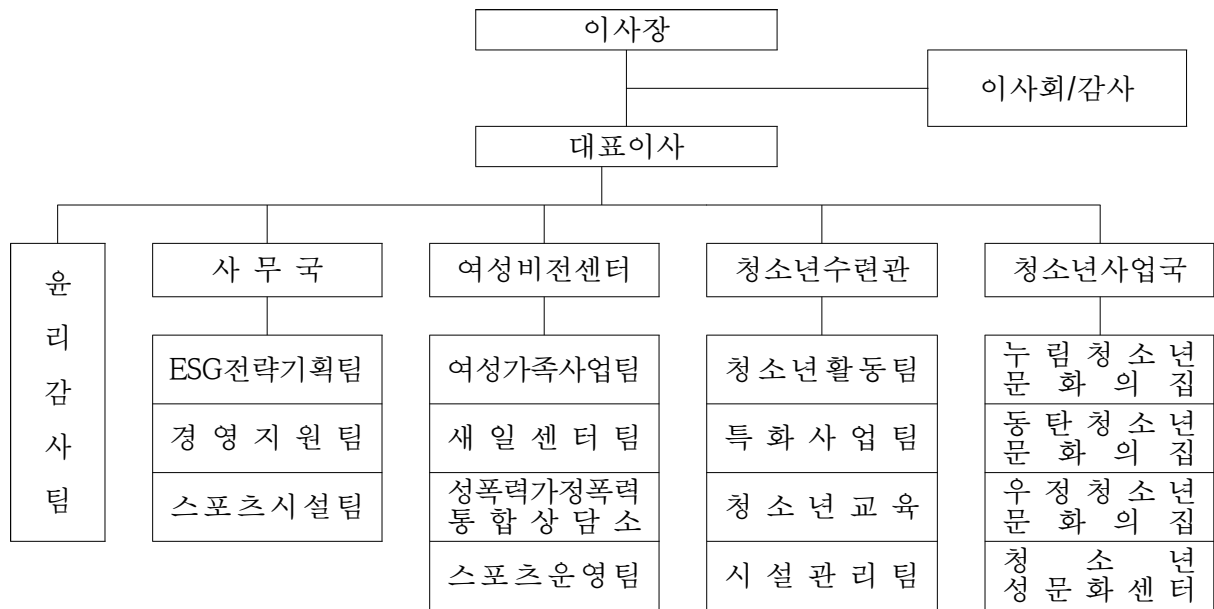
□ 출연 예산액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3년도 예산액	2024년도 예산액	증감액	비 고
여성가족 청소년재단 출연 (청소년분야)	계	1,165,776	89,130	△1,076,646	
	인 건 비	359,559	-	△359,559	- 청소년사업국장 및 특화사업팀 직원 보수 및 제수당 - '23년 출연금 잔액(잉여금) 으로 편성(238,347천원)
	운 영 비	348,142	-	△348,142	- 특화사업팀 행정운영경비 - '23년 출연금 잔액(잉여금) 으로 편성(10,068천원)
	사 업 비	458,075	89,130	△368,945	- 특화사업팀, 청소년활동팀, 청소년교육팀 - 사업비 일부(159,500천원) '23년 출연금 잔액(잉여금)으로 편성

□ 기타 참고사항

- 1) 여성분야(여성다문화과) 및 청소년분야(청년청소년정책과) 각각 편성,
출연동의안 별도 제출
- 2) 재단의 목적 사업 외 시설 위탁 운영과 관련된 사업비(인건비, 운영비 포함)는
위탁사업비로 편성
- 3)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일반현황
 - 가) 주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5
 - 나) 설립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32조 및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다) 설립형태 : 출연기관(재단법인)
 - 라) 설립허가일 : 2016. 11. 22. (설립등기 2016. 11. 30.)
 - 마) 기본재산 : 300백만원
 - 바) 조 직 도 : 2국 1센터 1관 16팀



사) 국·관 주요업무

국·관	주요업무
청소년수련관	○ 청소년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지역네트워크 구축 ○ 청소년 참여, 교육, 문화 등 청소년활동사업 운영 ○ 청소년축제, 진로박람회 등 대규모 사업운영 ○ 유엔아이센터 병상장 운영 및 시설물 안전관리
청소년사업국	○ 청소년 참여, 교육, 문화 등 청소년활동사업 운영 ○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놀터 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동의안은 청소년정책 연구개발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활동진흥 등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고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4년도 사업 추진 시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시 재정에서 출연하는 것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출연예산액은 8천 9백만원으로, 2023년 대비 10억 7천 6백만원 감소하였으며, 계획한 사업내용이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는 재단의 사업범위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 2023년도 출연금 중 발생한 잉여금을 재편성하였음에도 각 항목별 사업비가 크게 감소한 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청소년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별사업의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0. 10.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10. 23.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

가. 제안이유

- 「행정기본법」 제7조의2에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상위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청소년수련시설 내 대관시설을 추가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신규 청소년시설 반영 및 주소 표기 관련 정비(안 별표 1).
 - 화성시 우정청소년문화의집, 화성시 청소년놀터 6호점(서연)
 - 시설 위치 도로명주소로 표기
- 미디어 관련 시설의 사용료 기준 마련(안 별표 2).
 - 청소년수련관 미디어스튜디오 및 청소년문화의집 미디어실 대관 운영
- 청소년시설 사용료 등 감면기준 정비(안 별표 3).
 - 나이에서 ‘만’ 표시 삭제
 - 청소년시설이 아닌 수영장 이용 감면 부분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된 청소년시설 2개소의 명시·주소 표기방식 정비·청소년수련관 미디어스튜디오와 청소년문화의집 미디어실 신규 대관에 따른 사용료 산정·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기준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 검토결과, 별표 서식 등의 단순 개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 미디어스튜디오와 청소년문화의집 미디어실 사용료를 산정함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의 대관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0. 10.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10. 23.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복지정책과장 이향순)

가. 제안이유

☐ 출연배경

- 1) 재단법인 화성시사회복지재단은 시민의 요구를 이해하고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포용적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화성시 복지 욕구에 대한 사회서비스 질 향상 도모
- 2) 정책연구사업, 화성형 모금사업, W-아카데미, 네트워크 및 플랫폼 사업, 지역복지사업, 수탁시설 운영 및 관리 등 고유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8조에 따라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함

☐ 출연목적(필요성)

- 1)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2) 재단의 주요업무
 - 복지분야 맞춤형 조사·연구 및 복지정책 제안
 - 민간 복지자원 개발 및 나눔 네트워크 구축·운영
 - 지역 내 복지 유관기관 간 협력 지원 및 사회복지분야 프로그램 개발·보급
 -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 출연근거(관련법령 또는 조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 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운영재원)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8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나. 주요내용

□ 정책연구사업

1) 사업내용

- 복지 현장과의 소통과 데이터 기반의 연구를 통해 시민의 요구를 이해하고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 개발
- 조사·연구 15건, 복지정책포럼 1회 개최, 연구주제 시민 공모전 1회

2) 사업기간: 2024. 1. ~ 12.

3) 사업대상: 화성시민, 사회복지 분야 관계자 등

4) 필요예산: 478,950천원

□ 화성시 공유복지 플랫폼

1) 사업내용

- 복지관련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통해 시민, 복지관련 종사자의 복지정보 접근성 강화 및 스마트 복지 제공
- (연결) 참여 주체기관 및 개인의 공유체계 플랫폼 인프라 조성
- (참여) 공유사업의 참여주체 확보
- (확산) 집단 지성을 통한 새로운 지식과 가치 확산

2) 사업기간: 2024. 1. ~ 12.

3) 사업대상: 화성시민, 복지 관련 유관기관, 서포터즈, 파트너기관 등

4) 필요예산: 400,000천원

□ 화성복지거버넌스

1) 사업내용

- 지역사회 복지현안 해결과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민·관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활동 및 과정 지원
- 민·관 복지 거버넌스(화성시, 재단, 협의체, 협의회 등) 운영 6회
- 사회공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4회

2) 사업기간: 2024. 1. ~ 12.

3) 사업대상: 화성시,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 분야별 기관(단체) 및 전문가

4) 필요예산: 4,000천원

□ 복지시설별 맞춤형 컨설팅

1) 사업내용

- 복지시설 조직진단 및 분야별 컨설팅을 통한 경영효율화 및 복지시설 조직역량 강화 지원
- 복지시설 경영, 행정, 조직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2) 사업기간: 2024. 1. ~ 12.

3) 사업대상: 화성시 복지시설 15개소

4) 필요예산: 44,895천원

□ W(welfare)-아카데미

1) 사업내용

- 화성시 복지분야 종사자 직무역량강화 및 복지 전문가 양성을 통한 사회서비스 질 향상
- 직급별, 시설유형별, 직무별 등 교육 지원 69회
- 학습자조모임 지원 10개팀(팀별 최소인원 4인 이상)

2) 사업기간: 2024. 1. ~ 12.

3) 사업대상: 화성시 복지분야 종사자

4) 필요예산: 115,841천원

□ 화성복지페스타

1) 사업내용

- 화성시민 및 복지분야 관계자가 참여하는 체험형 축제를 통한 복지정보 교류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조성
- (건강-Zone) 분야별 최신 복지 기기·용품 등 전시 및 판매를 통한 트렌드 선도
- (정보-Zone) 복지정책 소개 및 다양한 복지정보 공유를 위한 소통의 장 운영
- (樂-Zone) 복지시설 생상품 판매, 업사이클링·플리마켓 운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

- 2) 사업기간: 2024. 1. ~ 12.
- 3) 사업대상: 화성시민 및 복지분야 관계자 약 2,500명
- 4) 필요예산: 131,635천원

□ 국제교류 협력사업

- 1) 사업내용
 - 관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지원 및 해외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관내 외국인 근로자 대상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2건)
 - 해외(일본, 덴마크 등) 복지 선진기관 방문 및 MOU 체결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2건)
- 2) 사업기간: 2024. 1. ~ 12.
- 3) 사업대상: 관내 외국인 근로자 및 화성시, 복지관련 관계자, 재단 임직원
- 4) 필요예산: 49,890천원

□ 복지분야 종사자 힐링 사업

- 1) 사업내용
 - 화성시 복지분야 종사자 직무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 지원을 통한 종사자 소진 예방 및 이용자 서비스 질 향상 도모
 - 여행경비 및 문화체험비 지원
- 2) 사업기간: 2024. 1. ~ 12.
- 3) 사업대상: 화성시 복지분야 종사자 80명(1인당 25만원 지원)
- 4) 필요예산: 22,430천원

□ 화성형 모금사업

- 1) 사업내용
 - 지속가능한 민간자원 확보를 위한 관내 기업, 시민의 기부 활성화 촉진과 공정성 기반의 맞춤형 배분을 통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 복지 실현
 - 모금사업: 맞춤형 모금 전략 수립 및 퍼네이션(Fun+Donation) 모금 사업, 기부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통한 기부 활성화 도모, 홍보영상과 리플렛 등을 통한 모금 사업 활성화
 - 배분사업: 지역복지 현안 해결을 위한 특화사업 지원, 위기가구 긴급 지원 등 현장 중심 맞춤형 배분 사업 운영, 일자리 취약계층을 위한 ‘Good Job’ 공공브랜드 구축과 신규일자리 및 직업영역 창출
- 2) 사업기간: 2024. 1. ~ 12.
- 3) 사업대상: 관내 기업체(약 69,000개소) 및 화성시민, 관내 저소득층(중위소득 120% 이내) 및 사회복지시설 등
- 4) 필요예산: 143,500천원

□ 수탁시설 운영

1) 화성시립 아동청소년센터 2개소(남양, 봉담)

- 지원대상: 화성시 거주 아동·청소년
- 지원내용: 기본 6대사업(보호사업, 교육사업, 문화사업, 정서지원, 지원연계, 특화사업) 및 통합사례관리
- 위탁기관: 화성시청(아동친화과)
- 위·수탁기간: 2021. 1. 1. ~ 2025. 12. 31.

2) 화성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예정)

- 지원대상: 화성시민
- 지원내용: 기본 4대사업(재무상담, 채무조정상담, 불법사금융 피해대응, 복지서비스 연계) 등
- 위탁기관: 화성시청(복지정책과)
- 위·수탁기간: 2024. 1. 1. ~ 2028. 12.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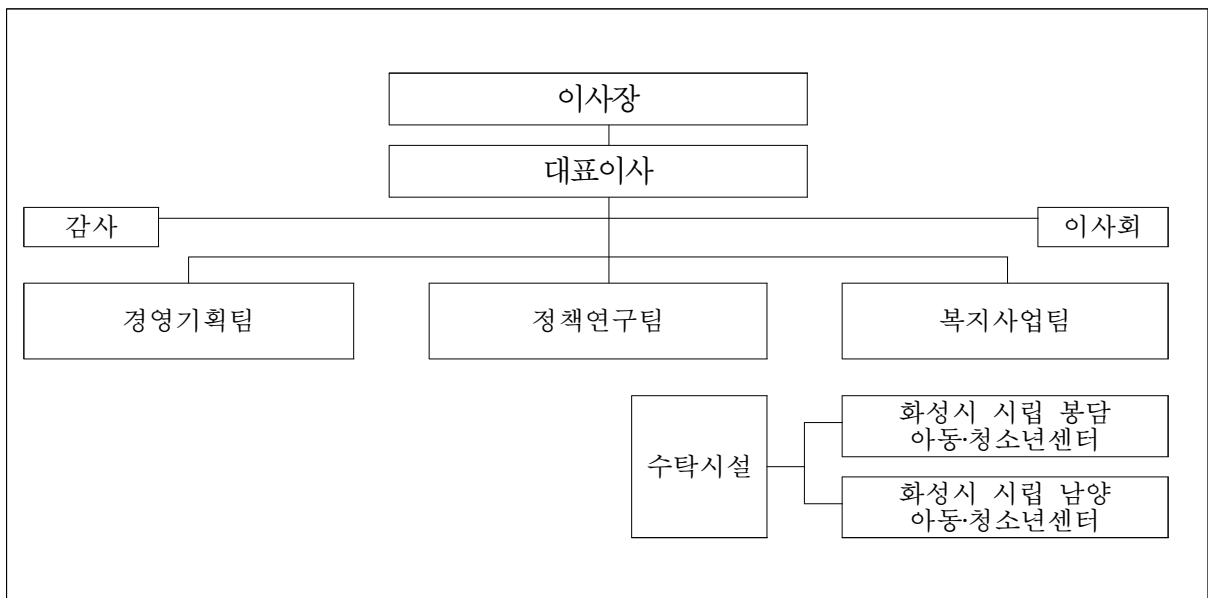
□ 출연 예산액

(단위: 천원)

사 업 명		2023도 예산액	2024년도 예산액	증감액	비 고
합계		1,890,068	3,382,655	1,492,587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출연금	인 건 비	914,155	1,202,275	288,120	- 인력 증원에 따른 보수 및 제수당 증액
	운 영 비	606,663	789,239	182,576	- 인력 증원에 따른 사무관 리비 및 복리후생비 증액 - 사무실 확대로 공공요금 및 각종 월 임차료 증액 - 그룹웨어 웹한글기안기 무료지원 종료로 인한 예산 신규 편성(97,000천원)
	사 업 비	369,250	1,391,141	1,021,891	- 신규사업 1건 및 증액 사업 8건을 반영한 사 업비 예산 증액

□ 일반현황

- 1) 명 칭: 재단법인 화성시사회복지재단
- 2) 주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 1301호
- 3) 설립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4) 설립형태: 출연기관(재단법인)
- 5) 설립일자: 2020. 11. 13.
- 6) 기본재산: 3,000백만원
- 7) 조직현황: 재단 본부 3팀, 수탁시설 2개소



8) 인력현황: 26명(현원 23명)

(단위: 명)

구분	정원	현원	대표이사	본부장	부장급	과장급	선임 사회복지사	사회 복지사	연구직
계	26	23	1	1	1	4	7	10	2
재단	16	15	1	-	1	4	3	4	2
시설	10	8	-	-	-	-	2	6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동의안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자 사회복지분야 조사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민간 복지자원 개발 등 화성시사회복지재단 고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4년도 사업 추진 시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시 재정에서 출연하는 것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출연예산액은 33억 8천 2백만원으로 2023년 대비 14억 9천 2백만원 증가하였으며, 계획한 사업내용이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는 재단의 사업범위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만큼 2024년 시의 재정운용 방향에 맞추어 인력 증원 및 추진사업의 규모, 시기 등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0. 10.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2023. 10. 23. 상정,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2. 제안설명 요지(복지정책과장 이향순)

가. 제안이유

-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채무구제제도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악성부채 확대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
- 화성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사무실 사용료 감면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 치: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1층(화성시 향남읍 행정서로3길 50)
- 용 도: 화성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면 적: 약 46.8㎡
- 감면비율: 100% 감면(무상 사용)
- 감면기간: 2024. 1. ~ 2028. 12.(5년)
- 수탁기관: 화성시사회복지재단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2023. 9. 2023년 제5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원안가결)
 - 2023. 10.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결
 - 2023. 11. 사무실 사용료 감면 통보

4. 안 건 : 불 입

5.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

- 관련법령 : 붙임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해당없음
- 기타참고사항 : 해당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동의안은 행정재산인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1층 전용면적 46.8㎡를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운영의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화성시사회복지재단에서 5년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감면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라 화성시가 100% 출연한 재단법인 화성시사회복지재단이 5년간 무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부결)

- ※ 사 유 :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의 사무운영을 화성시사회복지재단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등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해양아카데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0. 10.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10. 24.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관광진흥과장 채민우)

가. 제안이유

- 우리 시 전곡항을 중심으로 해양레저 문화의 저변 확대와 수도권 최고의 해양 레포츠 도시로 이미지 구축을 위한 「화성해양아카데미」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의 특수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화성해양아카데미 운영 수탁기관 선정에 앞서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관련법령

-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
(수탁기관의 선정)

나. 주요내용

□ 추진배경

- 공기관 위탁운영을 통한 공익성은 확보하였으나, 전문인력 부족으로 신규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이 미흡하여 민간역량 전환 검토 필요
 - 민간 전문기관 위탁운영을 통한 수도권 최고 해양레저 도시 이미지 구축
- 민간전문가의 지식, 경험 노하우를 적극 활용 해양레저 문화저변 확대
 - 해양아카데미 국제교류(중국 위해시), 국내교류(남원, 평창 등) 추진

□ 운영계획

- 운영방식: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자 선정 및 운영
 - 해양 레포츠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기관(관내 제한)
- 위탁기간: 선정일로부터 2년
 -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 증대
- 운영기간: 매년 1월 ~ 12월(12개월)
 - 청소년 국제(중국) 및 국내(평창, 남원)교류 기간은 제외(8월, 12월)
- 소요예산: 300백만원
 - 해양아카데미 운영 250백만원, 국제·국내 아카데미 교류 50백만원
- 운영인원: 총 5명(총괄운영자 1명, 책임운영 1명, 운영요원 1명, 안전요원 1명, 행정요원 1명)
- 운영관리
 - 운영실적 개선, 운영프로그램 개발, 인력관리 등 운영계획 수립
 - 프로그램 운영실적, 프로그램 개발 사항, 특이사항, 지시 및 전달사항 이행
- 장비관리
 - 추가 필요장비는 위탁운영비로 추가 임대 후 운영
 - 장비는 주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 교육내용
 - 딩기요트 및 카약 체험, 해양안전교육(요트 시뮬레이터)
 - 해양레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추가 프로그램 발굴
- 국내 및 국제교류
 - 우호도시인 중국 위해시와 관광 및 체육 분야 교류 확대
 - 국내 자매도시(평창, 남원)와 해양아카데미 민간교류 신규 발굴
- 위탁사무내용
 - 해양레저체험 및 해양안전교육 운영, 해양레저 프로그램 개발
 - 학교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발굴, 화성시 해양·관광행사 지원
 - 해양아카데미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위탁자 요구 사무관리 등
 - 국내 및 국제교류 지원 및 교류 대상 발굴
 - 해양레저 장비유지 관리(안전관리 및 점검 포함)

□ 소요예산(안): 300,000천원

항 목	산출내역	예산(천원)
합	계	300,000
■ 인건비(5명) -총괄운영자 -책임운영요원 -전문운영요원 -안전운영요원 -행정전문요원	소 계 3,700,000원*9개월*1인 3,500,000원*9개월*1인 3,000,000원*9개월*1인 3,000,000원*9개월*1인 2,800,000원*9개월*1인	144,000 33,300 31,500 27,000 27,000 25,200
■ 4대보험료 및 퇴직금	5명*9개월	37,180
■ 보험료	수상레저보험 9개월	4,200
■ 유류비	구조선 2대, 콤비보트 1대, 크루저 3대	5,000
■ 식대 - 총책, 책임, 전문, 안전, 행정요원	5명*8,000원*9개월*22일	7,920
■ 피복비	춘계, 하계*5명	1,300
■ 장비유지관리비	소모품 교체, 수리비 크레인사용료, 안전장비 구입, 안전검사 등	10,000
■ 장비임차료	교육장 및 교육정, 카약, 크루저 임대	30,000
■ 강사료	선박전기, 기관운영, 항해장비, 선박 항해 등 강의	4,000
■ 교육훈련지원비	강사 역량강화 연수 및 자격증 취득 등	1,000
■ 홍보비	안내 책자제작 및 홍보, 문헌구입 등	1,400
■ 일반운영비	공과금, 사무용품, 사감리비, 워크샵 등	4,000
■ 국제교류비 - 국내문화교류(평창, 남원) - 한중문화교류 방한	소 계 식비, 숙박비, 문화체험비 등 숙박비, 교통비, 통역비, 식대, 입장료 등	50,000 10,000 40,000

☐ 기대효과

- 민간 전문인력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해양레저 프로그램 운영에 차별화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용객들의 체험만족도 향상 도모
- 사업의 진행, 유지, 관리 측면에서 일관되고 신속하게 대응
- 화성시 전곡항 중심으로 해양레저 문화 저변확대

☐ 향후계획

- 2023. 10.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및 심의
- 2023. 11. 수탁기관심사 위원회 모집 및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공모
- 2023. 12.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 2024. 1. 민간 위·수탁 협약 체결
- 2024. 1. ~ 2024. 12. 해양아카데미 사업 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동의안은 전곡항을 중심으로 해양레저 프로그램을 시민들에 제공하고자 화성해양 아카데미의 운영을 2024년 1월부터 2년간 민간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을 통하여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이용객들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해양도시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서부권 관광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0. 10.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10. 24.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문화예술과장 최원교)

가. 제안이유

○ 출연배경

- 1)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우리 시 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함
- 2)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문화, 예술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함

○ 출연목적(필요성): 우리 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사업 추진

- 1) 시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생태계 조성
- 2)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자치 시스템 구축
- 3) 화성시 청년 예술인 발굴과 창작지원을 통한 다양성이 확보된 건강한 지역예술 생태계 조성
- 4) 축제 및 공연, 문화예술 진흥 및 작품 활동과 보급, 교육활동 등

※ 출연근거(관련법령 또는 조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나. 주요내용

○ 문화자치 협의체 운영 및 활성화

- 사업목적: 다양한 문화 주체의 참여와 협력으로 지역문화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시민 스스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문화자치 참여 증진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업내용: 문화자치 참여 시민협의체 5개 분과 운영
- 사 업 비: 24,800천원

○ 기획전시 운영

- 사업목적: 시민의 시각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예술가 활동 지원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업내용: 기획전시 총 3회, 전시 연계프로그램 총 12회
 - 주제별 전시기획: 가정의 달 기획전, 여름방학 특별기획전, 신진작가 공모전, 지역작가 조명전(중견 및 원로작가) 등
- 사 업 비: 306,810천원

○ 가족사랑축제

- 사업목적: 동탄신도시 주민 정주의식 제고, 문화예술축제를 통한 유대감 강화
- 사업기간: 2024. 5.
- 사업내용: ESG친환경 체험, 주민공연, 전문공연, 시민참여 체험부스 등 시민참여 축제 기획
- 사 업 비: 171,000천원

○ 찾아가는 공연장

- 사업목적: 화성시민 전문 예술 공연 접근성 향상을 통한 일상 속 문화예술 저변 확대
 - 사업기간: 2024. 1. ~ 11.
 - 사업내용
 - 방문공연: 노인, 장애인, 아동 복지·보육시설 및 소상공기업 근로자 대상 공연
 - 기획 및 초청공연: 특정 주제, 콘셉트로 미니 콘서트 또는 외부기관 초청공연
 - 버스킹: 화성시 전역 공원·광장 야외 공연
 - 상설버스킹: 다수 유동인구 및 상주인구 지역 거점 내 상설 공연 운영
 - 프리버스킹: 자격, 지역 등의 제한 없이 공연 희망자 대상 장소 및 운영 지원
- ※ 목표: 공연 280회
(버스킹 120회, 방문공연 40회, 상설버스킹 60회, 프리버스킹 60회)
- 사 업 비: 452,600천원

○ 라이징스타를 찾아라

- 사업목적: 시민일상에서 다양한 공연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 제공
- 사업기간: 2024. 1. ~ 11.
- 사업내용
 - 경연 추진 및 TOP5 선정
 - TOP5: 전문가+시민평가단 100인 선정
 - 해외진출 뮤지션: TOP5 중 교류대상 마켓 예술감독 선정
 - 우승팀 특전 및 국제교류 진행
 - 해외 쇼케이스 및 마켓 홍보부스(화성시, 재단, 뮤지션 프로모션) 운영
- 사 업 비: 297,000천원

○ 2024 ‘예술이음’ 운영

- 사업목적: 화성시 예술인 50여 명 발굴 및 시민향유를 위한 공연 기획 운영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업내용
 - 관내 화성시 예술인 발굴 및 시민향유 공연 운영
 - 읍면동 대상 찾아가는 공연투어 및 시민 맞춤형 특별기획공연 운영
- 사 업 비: 796,705천원

○ 화성형 문화예술 후원프로젝트

- 사업목적: <2023 화성형 메세나> 사업의 후원 참여 대상을 시민으로 확장하여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 및 지역 예술 진흥 기반 구축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업내용
 - (기업후원프로그램) 예술단체를 후원하는 기업기부금과 재단지원금을 1:1로 매칭하여 화성예술인의 문화예술 프로젝트 지원
 - (시민기부프로그램) 크라우드 펀딩 운영으로 지역 예술가의 창작역량을 소개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 참여 독려
 - (기부캠페인프로그램)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진행,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온라인 기부 플랫폼 구축
- 사 업 비: 122,450천원

○ 화성예술활동지원

- 사업목적: 지역예술인 고유의 작품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지속적 예술활동 지원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업내용: 관내 미발표 신작의 창작 활동 지원(공연, 전시, 출판), 예술프로젝트 50건 지원
- 사 업 비: 430,000천원

○ 거점 활성화지원 사업

- 사업목적: 생활밀착형 거점을 중심으로 예술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지역 문화 예술 활성화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업내용
 - 생활밀착형 거점(공간·인력·콘텐츠 중심 거점)에서의 예술 활동 지원
 - 문화자원을 연결하여 지역-예술가-공간 기반의 자생적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
 - 예술인 간의 협업, 창작, 발표, 역량 강화 활동 및 네트워킹 지원
 - 지역주민 연계 프로그램 운영: 거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클래스
 - 문화 사각지대(대상, 지역 등) 해소를 위한 우대 선정
 - 거점별 최대 60백만 원 지원, 10건 선정
- 사 업 비: 600,000천원

○ 출연 예산액

(단위: 천원)

사 업 명		2024년도 예산액	2023년도 예산액	증감액	비 고
화성시 문화재단 출연	총 계	11,207,741	11,117,540	90,201	
	인 건 비	6,251,851	5,862,851	389,000	
	운 영 비	210,497	187,507	22,990	
	사 업 비	4,745,393	5,067,182	△321,789	

○ 기타 참고사항 등 (※ 기준일: 2023. 9. 18.)

1) 설립일자: 2008. 8. 28.

2) 조직현황: 4본부 1센터 30개팀



○ 인력현황: 정원 365명(정규직 228명, 무기직 14명, 공무원 123명)

(단위: 명)

구분	총계	직급별							비직급별			
		계	대표이사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무기직	공무직	임금피크
정원	365	228	1	5	30	36	71	85	137	14	123	-
현원	342	218	1	3	28	32	71	83	124	13	111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동의안은 문화예술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축제 및 공연, 문화예술 창작 지원 등 화성시문화재단 고유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4년도 사업 추진 시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시 재정에서 출연하는 것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출연예산액은 112억 7백만원으로, 2023년 대비 9천만원 증가하였으며, 계획한 사업내용이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는 재단의 사업범위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 인건비와 운영비가 증가한 반면 사업비는 감소함에 따라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기회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생활문화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0. 10.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10. 24.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문화예술과장 최원교)

가. 제안이유

- 「화성시 생활문화창작소」의 위·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화성시의 문화쉼터 및 문화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에 앞서 『화성시 생활문화진흥 조례』 제12조,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시설현황

- 시 설 명 : 화성시 생활문화창작소
- 위 치 : 봉담읍 동화리 11-1번지 (구) 농수산대 수산실습장
- 현 수탁자 : 수원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 2. ~ 2023. 12.)
- 시설현황
 - ▶ 규 모 : 부지 1,806㎡, 연면적 936㎡ (1층, 경량철골조)
 - ▶ 공간구성 : 커뮤니티라운지, 키친랩(공유주방), 디자인랩, 리빙랩, 교육실 등
- 예산현황(2023) : 495,969천원 (도비 30,000천원, 시비 465,969천원)
- 운영인력 : 4명(총괄감독 1명, 디자이너 1명, 미디어디렉터 1명, 행정사무 1명)
- 위탁사무내용
 - 화성시 생활문화창작소 시설 및 관리 ·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주요시설(키친랩, 디자인랩 등)의 목적사업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 · 운영
 - 문화 단체 및 동호회 활동 육성 · 지원과 활동 공간 지원
 -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등

□ 위탁계획

- 위탁기간 : 2024. 1. ~ 2025. 12. (2년)
- 신청자격 : 화성시 생활문화진흥 조례 제12조
 - 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소재한 생활문화·예술 활동의 개발 또는 지역 커뮤니티 사업 수행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수탁자 선정방법
 -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공개모집 원칙
 - 수탁기관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
 -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적격자 선정
 -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사업계획의 전문성, 조직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 화성시 생활문화창작소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한 종합 검토 결과 개방성 확대와 민간 전문성(문화 프로그램 기획자, 미디어디렉터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공간 운영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함이 적절함

□ 향후추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동의 : 2023년 10월
- 민간위탁 모집공고 및 접수 : 2023년 10월~11월
- 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 : 2023년 11월
- 협약체결 및 2024년 사업계획 수립 : 2023년 12월
- 민간위탁 운영 : 2024년 1월 ~ 2025년 12월

□ 예산수반사항 : 462,976천원(도비 30,000천원, 시비432,976천원)

※ 2024년 본예산 편성예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동의안은 생활문화와 예술활동의 개발 및 복합문화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생활문화창작소의 위탁계약기간이 오는 2023. 12. 31.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다시 실시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 선정을 통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문화체험 활동을 멀지 않은 거리에서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0. 10.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10. 24.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문화예술과장 최원교)

가. 제안이유

- 「화성시 역말문화회관」의 위·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통문화예술 계승 발전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에 앞서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화성시의회 동의의 필요성을 언급함.

나. 주요내용

□ 위탁시설현황

- 시 설 명 :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 위 치 : 화성시 봉담읍 동화새터길 133 (동화리 620번지)
- 현 수탁자 : (사)봉담역말농악보존회 (2022. 1. ~ 2023. 12.)
- 시설현황
 - ▶ 규모 : 부지 424.5㎡, 연면적 657.27㎡ (지상 3층)
- 예산현황(2023) : 190,952천원 (시비 100%)
- 운영인력 : 2명(실장 1명, 간사1명)

□ 위탁사무내용

- 역말문화회관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 전통문화예술의 전수 및 교육을 통한 양성
-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 활동
- 화성시장이 전통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위탁계획

- 위탁기간 : 2024. 1. ~ 2025. 12. (2년)
- 신청자격 :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소재하고 목적사업 또는 주요사업 내용에 전통문화예술의 보급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수탁자 선정방법
 -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공개모집 원칙
 - 수탁기관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
 -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적격자 선정
 -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사업계획의 전문성, 조직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한 종합 검토 결과 전통문화예술 계승 발전과 민간 전문성(전통문화 연구 및 조사, 전승사업을 통한 인재양성)을 활용한 효율적인 시설 운영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함이 적절함

□ 향후추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동의 : 2023년 10월
- 민간위탁 모집공고 및 접수 : 2023년 10월~11월
- 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 : 2023년 11월
- 협약체결 및 2024년 사업계획 수립 : 2023년 12월
- 민간위탁 운영 : 2024년 1월 ~ 2025년 12월

□ 예산수반사항 : 180,725천원(시비100%) ※ 2024년 본예산 편성예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동의안은 농악과 같은 전통문화예술의 발전과 전수를 도모하고 이에 대한 교육과 강연을 제공하는 역말문화회관의 위탁계약기간이 오는 2023. 12. 31.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다시 실시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 선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예술이 현대문화의 그늘에 가려지지 않고 계속하여 전승될 수 있는 장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1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0. 17.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10. 24.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평생교육과장 신용선)

가. 제안이유

- 인재육성사업(장학사업) · 교육지원사업 · 평생학습진흥 · 지역교육 발전에 관한 연구개발 및 학술진흥을 도모함으로써 국가와 지역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화성시 관내학교를 우수한 학교로 만들고,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함에 이바지하고자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는 바,
- 이와 관련하여 재단 고유목적사업(장학지원),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통한 학교교육지원, 혁신교육지구 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진로직업탐색교육 및 진로직업체험활동 등 재단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규정에 따라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함.

※ 출연근거(관련법령 또는 조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장학기금 재원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의 타당성 및 출연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한다.

- 장학사업 운영, 지역교육 거버넌스 구축 등 화성시민의 교육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화성시가 교육 국제화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재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재단의 주요사업

- 장학사업 운영

-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 사회적 배려 장학사업
 - 「화성 into 테크노폴」 인재육성

- 지역교육 거버넌스 구축

- 교육자치 역량강화로 행복한 화성 만들기
 -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으로 교육격차 해소
 - 창의융합 인재양성을 위한 지역중심 미래교육 실현

- 따라서 상기와 같은 각종 재단 주요사업 추진과 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 교부가 필수적임.

나. 주요내용

-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 실현을 위한 장학사업

-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 사업목적 : 화성시민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습여건 보장을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장학금 지원
 - 사업내용 : 화성시민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학습비 지원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대상 : 화성시 1년 이상 거주, 만 19세 이상 화성시민 2,160명
 - 총사업비 : 648백만원

· 사회적 배려 장학 지원

- 사업목적 : 화성시 출신 학생들의 학습여건 보장을 위한 생활비 및 주거비 지원
- 사업내용 : 꿈드림·주거비지원 장학금: 대학생 대상 생활비성 장학금, 저소득층 대학생 교환학생 및 유학생 발굴 장학금, 초·중등생 영어 캠프 장학금 지원, 특기·더드림 장학금: 초·중·고 및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의 생활비성 장학금
- 사업기간 : 2024. 1. ~ 12.
- 총사업비 : 996백만원 (시출연 600백만원, 재단 이자수익 396백만원)

○ 「화성 into 테크노폴」

- 사업목적 : 화성시 첨단산업 생태계를 견학하고 해외 선진 스마트도시를 비교하여 화성시민으로서의 자부심 고취와 화성 글로벌 혁신인재 육성
- 사업내용 : 화성시 학생들의 글로벌 리더십 역량강화 및 국제적 감각 함양 기회를 통해 ‘테크노폴 화성’ 실현을 위한 창의적 정책 제안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대상 : 화성시 거주 고등학생(80명) 및 대학생(20명)
- 총사업비 : 337백만원(시출연 307백만원, ASM 기부금 30백만원)

○ 인재육성을 위한 플랫폼 구축사업

· 정보통신 보안운영 사업

- 사업목적 : 대시민 홈페이지 접근 편리성 제공,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매, 재단 내부 정보자산을 내/외부의 위협으로 보호를 위한 보안 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 : SSL인증서 및 본인인증, 보안 프로그램 운영,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챗GPT 플러스 구매 등
- 사업기간 : 2024. 1. ~ 12.
- 총사업비 : 65백만원

· 정보통신 유지운영 사업

- 사업목적 : 24시간 무중단 운영 서비스를 원칙으로 시스템 유지보수를 지원하여 장애발생 요소 사전예방 및 대외적 시민과 내부 직원들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
- 사업내용 : 통합경영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그룹웨어시스템 유지보수, 전산장비 유지보수,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유지 보수, 네트워크 접근제어 유지보수, 오피스하드 시스템 유지보수
- 사업기간 : 2024. 1. ~ 12.
- 총사업비 : 553백만원

○ 지역교육 거버넌스 구축

· 화성 학생동아리 축제

- 사업내용 : 초·중·고 학생동아리 및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생주도형 축제 운영
- 사업기간 : 2024. 1.~ 2024. 12.(축제: 10월 토요일 중 1일간 진행 예정)
- 사업대상 : 관내 초·중·고 학생동아리, 지역사회 교육관련 단체 및 지역주민
- 사 업 비 : 180백만원

· 학생 사회 참여 프로젝트 지원

- 사업내용 : 청소년의 민주시민으로서 성장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운영 지원
- 사업기간 : 2024. 1.~ 2024. 12.
- 사업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생 사회참여팀 20팀
- 사 업 비 : 65백만원

· 다가치 화성탐사대

- 사업내용 : 화성시 자연환경 및 인·물적 자원을 활용한 교육과정 연계 체험학습 활동 지원
- 사업기간 : 2024. 1.~ 2024. 12.
- 사업대상 : 화성시 관내 3, 4학년 850학급
- 사 업 비 : 750백만원

· 마을 교육기부 수업지원

- 사업내용 :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분야별 교육기부 수업 실시
- 사업기간 : 2024. 1.~ 2024. 12.
- 사업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전체학급(병설유치원, 교내 동아리 포함)
- 사 업 비 : 578백만원

· 예술탐구공연 지원

- 사업내용 : 전문공연단체가 학교로 방문하여 설명과 함께 예술 공연 실시
- 사업기간 : 2024. 1.~ 2024. 12.
- 사업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대상 250회
- 사 업 비 : 360백만원

· 현장직업체험 DJ톡(Dream Job Talk)

- 사업내용 : 6개 코스로 분류된 진로체험 프로그램 중 학생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체험 활동 실시(4차시)
- 사업기간 : 2024. 1.~ 2024. 12.
- 사업대상 : 관내 중학교 350학급 (1학년 우선)
- 사 업 비 : 329백만원

· 흥미잡다

- 사업내용 :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직업 분야 탐구 및 이해를 위한 활동 지원
- 사업기간 : 2024. 1.~ 2024. 12.
- 사업대상 : 관내 초·중학교 550학급(초6학년 200학급, 중1학년 350학급)
- 사 업 비 : 150백만원

· 직업잡고

- 사업내용 : 다양한 직업분야 강사 공개모집을 통한 인력풀 구축 및 진로강좌 매칭, 전·현직 직업전문가가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 강연 실시
- 사업기간 : 2024. 1.~ 2024. 12.
- 사업대상 : 중학교 450학급
- 사 업 비 : 96백만원

· 창창한 진로교육

- 사업내용 : 기업가 정신 이해 및 이를 통한 창의적 혁신을 이해와 모의창업 및 창직 경험
- 사업기간 : 2024. 1.~ 2024. 12.
- 사업대상 : 관내 중·고등학교 240학급
- 사업비 : 70백만원

·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 사업내용 : 현장 중심의 교원연구 모임 지원을 통한 미래교육공동체 활성화
- 사업기간 : 2024. 1.~ 2024. 12.
- 사업대상 : 총 4개팀(관내 초·중·고 교원 8명 이상 1팀 구성)
- 사업비 : 23백만원

· 화성 진학설명회

- 사업내용 : 권역별 수시특강 개최로 관내 고등학생들을 위한 정보 취득 기회 제공, 대학별 상담 부스 운영을 통한 대학 및 진학 정보 제공
- 사업기간 : 2024. 1.~ 2024. 12.
- 사업량 : 수시 특강 2회(서부권, 동부권), 진학정보박람회 1회
- 사업비 : 99백만원

· 찾아가는 코딩교실

- 사업내용 : 소프트웨어교육 전문강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 및 실습형 코딩교육
- 사업기간 : 2024. 1.~ 2024. 12.
- 사업대상 : 관내 초등학교 6학년 110학급
- 사업비 : 237백만원

· 화성진로체험거리

- 사업내용 : 권역별 진로체험거리로 찾아가 소수 단위(5~15명) 현장직업체험 실시
- 사업기간 : 2024. 1.~ 2024. 12.
- 사업대상 : 관내 초등학교 150학급(6학년)
- 사업비 : 103백만원

· 화성 마을교육과정 운영 지원

- 사업내용 : 화성시 마을 및 지역과 연계한 마을교육과정 운영 지원
- 사업기간 : 2024. 1.~ 2024. 12.
- 사업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120학급
- 사 업 비 : 108백만원

· 학부모 스터디

- 사업내용 : 학부모스터디 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지역인적자원 구축
- 사업기간 : 2024. 1.~ 2024. 12.
- 사업대상 : 화성시 관내 학부모로 구성된 스터디 30개팀
- 사 업 비 : 68백만원

○ 출연 예산액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3년도 예산액	2024년도 예산액	증감액	내 역
합 계		8,884,073	9,320,968	436,895	
인 건 비		2,503,947	2,435,994	△67,953	- 대표이사 보수 및 제수당 - 감사팀, 경영기획본부, 화성교육협력지원본부 직원 보수, 퇴직급여, 연금부담금
운 영 비		1,397,678	1,401,854	4,176	- 감사팀, 경영기획본부, 화성교육협력지원본부, 행정운영경비 - 예비비 등
사업비	장 학 금	600,000	600,000	-	- 장학금 지원 사업
	정 보 통 신	524,748	617,687	92,939	- 정보통신 보안운영 사업 - 정보통신 유지관리 사업
	장 학 사 업	808,000	1,049,233	241,233	-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사업 - 학령기 장학금 운영비 - 화성 into 테크노폴 사업비
	교육협력지원	3,049,700	3,216,200	166,500	- 화성교육협력지원본부 사업비

○ 기타 참고사항

1)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일반현황 (2023. 9. 3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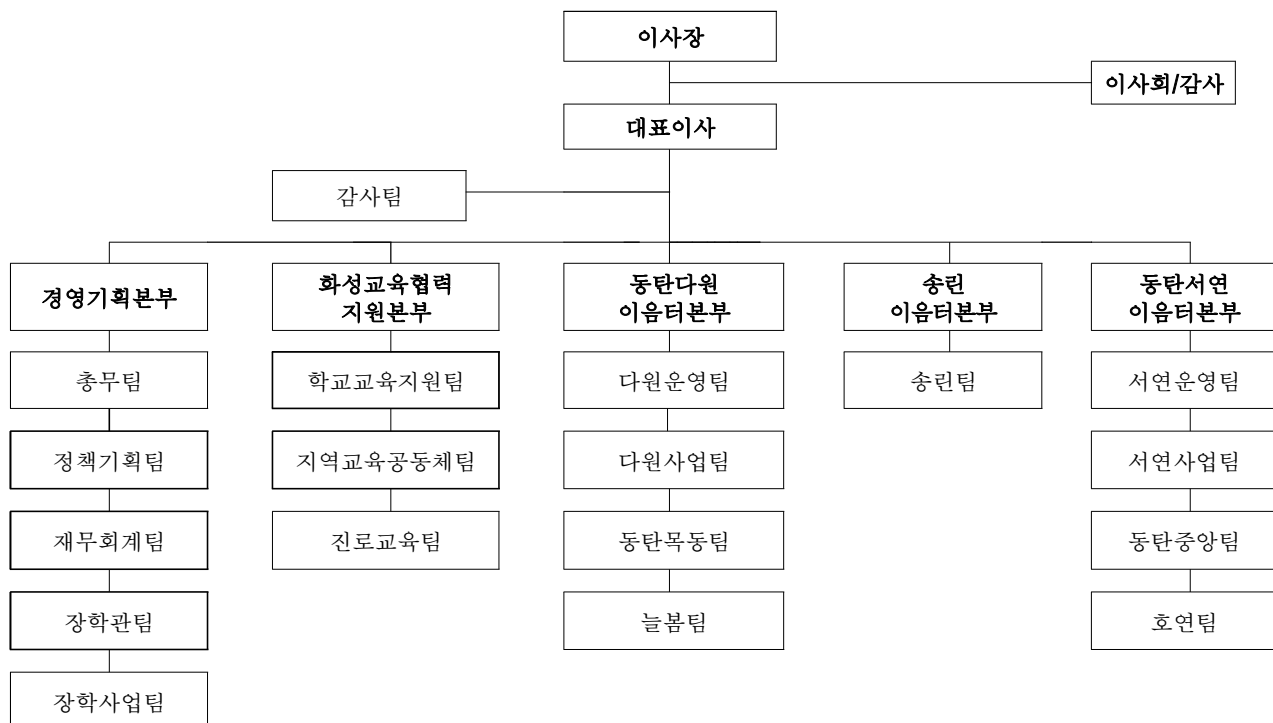
기 관 명 :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 정명근 / 대표이사 : 임선일)	사업자등록번호 : 124-82-16124
주 소 : 경기 화성시 10용사로 343-14 화성시평생학습관 2층	전화번호 : 031) 366-3630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설 립 일 : 2006. 10. 20.
조 직 : 5본부 18팀, 138명	기본재산 : 11,084,340천원

주요업무

-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장학관 운영
- 화성형 미래교육 실현 및 화성혁신교육지구 공교육 지원 사업
- 화성형 진로직업탐색 및 체험 교육 지원 사업
- 학교복합화시설 이음터 수탁운영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 구현

2) 조직도

- 5본부 18팀, 138명



3) 인력현황

- 직렬별 정원

(단위: 명)

구 분	계	임원	일반직	계약직
정 원	138	1	122	15
현 원	130	1	115	14

- 직급별 정원 (일반직 정원)

(단위: 명)

구 분	계	2급	3급	4급	5급	6급	임원
정 원	123	-	20	31	33	38	1 (대표이사)
현 원	116	-	10	13	35	57	1 (대표이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동의안은 지역교육 발전과 학술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사업, 교육지원사업, 진로직업체험 활동 지원 등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고유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4년도 사업 추진 시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시 재정에서 출연하는 것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출연예산액은 93억 2천만원으로, 2023년 대비 4억 3천 6백만원 증가하였으며, 계획한 사업내용이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는 재단의 사업범위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 출연금 중 장학사업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사업 등 관련 세부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반면 장학사업 외의 진로체험, 지역교육 거버넌스 구축 등 타 사업과의 예산배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1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0. 17.

다. 상 정 일 자 :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10. 24.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체육진흥과장 박재영)

가. 제안이유

○ 출연배경

- 1) 재단법인 화성FC 설립 이후 관람스포츠 제공을 통하여 스포츠를 통한 시민 화합의 매개체 역할을 도모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건강한 스포츠 여가문화 선용을 통한 체육진흥에 기여
- 2) 시민과 함께하는 자생력을 갖춘 시민축구단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어린이 축구 보급, 축구 꿈나무 육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후원사 유치 등 건강한 미래를 위한 기반 확립
- 3) 이와 관련한 성인선수단 운영, 산하 유스팀 육성,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 재단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화성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출연

○ 출연목적(필요성)

- 1) 스포츠도시 이미지 구축 및 프로화 대비
 - 대한축구협회 주관 K3리그 및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둬 지역 시민구단의 위상을 높여 지역 홍보 및 건강한 스포츠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우수 선수 영입을 통해 향후 프로리그 진출을 대비한 구단 경쟁력 강화
- 2) 화성FC 홍보·마케팅 및 서포터즈 모집
 - SNS·블로그·홈페이지, 길거리 이벤트 행사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구단 인지도를 높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팬 모집
 - 관내 기업체 등 협력단체 후원을 통해 구단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많은 관람객들이 구장을 방문하도록 유도하여 소비 활성화에 기여

3) 시민화합과 여가활동 독려

- 관람스포츠의 특성을 활용한 볼거리 제공 및 연고지 구단 응원문화 활성화로 시민화합에 기여
- 진정한 시민축구단으로 성장을 위한 화성FC 기반을 정립하고자 다양한 단체와 교류 및 축구단과 시민이 함께 활동하는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자생력 강화

4)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선순환 시스템 구축

- 축구교실(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아이들에게 축구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여 전문선수로 육성
- 유스시스템 구축으로 지역 축구 인재가 화성시에서 엘리트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 정립

※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

「화성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재산의 조성 등) ②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시의 출연금

나. 주요내용

○ 지원대상: 재단법인 화성FC

- 1) 사무국 및 선수단 운영
- 2) 화성FC 산하 유스팀 육성
- 3) 지역사회 공헌활동 및 구단 홍보·마케팅 추진
- 4)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 지원내용: 화성FC 사무국 및 선수단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 출연기관: 재단법인 화성FC

- 1) 주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470, 화성종합경기타운 1층
- 2) 설립근거: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및 「민법」 제32조
- 3) 설립형태: 출연기관
- 4) 설 립 일: 2021. 9. 1.
- 5) 기본재산: 50,000천원(재단설립 자본금)
- 6) 조직 및 인력: 1국 1팀

○ 지원절차: ①출연금 교부 신청 ②산출내역 검토 ③출연금 교부 결정 및 지급

○ 출연 예산액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액	2023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4,898,444	5,028,059	-19,615	-2.38%
행정운영경비	869,584	716,464	163,120	22.77%
인건비	491,922	377,228	114,694	30.40%
경 비	377,662	339,236	48,426	14.28%
사업비	4,028,860	4,311,595	-282,735	-6.56%

○ 화성FC 주요사업 계획

1) 화성FC 선수단 운영

- 사업목적: 2023 K3리그 및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통해 건강한 스포츠 도시 이미지 구축 및 시민들에게 관람 스포츠를 제공하여 여가 선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사업내용
 - 2023 K3리그 및 각종 대회 참가, 선수단 전지훈련 등 지원
 - 선수단 연봉 및 수당, 급량 및 숙소 운영 등
- 사업기간: 2024. 01. ~ 2024. 12.
- 소요예산: 3,448,720천원

2) 화성FC 산하 유스팀 운영

- 사업목적: 산하 유스팀 운영을 통하여 지역 내 우수선수가 관외로 스카우트 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우수한 선수를 육성하여 성인팀으로 영입하는 선순환 육성시스템 구축하고자 함
- 사업내용
 - KFA 주관 주말리그 및 기타 대회 참가
 - 신입 선수 스카우트 및 졸업 선수 진로 탐색 지원
- 사업기간: 2024. 01. ~ 2024. 12.
- 소요예산: 264,000천원

3) 화성FC 홍보 마케팅 강화

- 사업목적
 -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여 문화콘텐츠사업으로써 관람스포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즐거움을 주는 구단 이미지 확립
 -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써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건강한 스포츠문화 저변확대에 기여하는 재단 이미지 구축 및 지역발전과 화합에 기여
- 사업내용
 - 홈경기 운영 / 이벤트 대행 및 홈경기장 데코레이션
 - 화성FC 홍보물품 제작
 - 영상 및 사진 등 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홍보활동 전개
 - 온라인 브랜딩 및 디자인을 통한 온라인(SNS, 홈페이지 등) 홍보
 - 국내외 우수기업 및 관내 연고기업 대상 파트너십 추진
 -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업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거점 마련
 - 영상 및 제작물들을 활용한 홍보활동 전개
 - 대학생 마케터 운영
 - 유소년 축구교실(아카데미)운영
 - 오프라인 홍보 및 관내 행사 홍보부스 지원
 - 유관기관 협조 봉사활동 및 관내기관 협업 공헌활동 진행
 - 사회공헌활동 홍보물 제작
 - 생활축구 운영 관련 행정 및 용품 등 지원 사업
 - 유소년 축구교실 및 에스코트 키즈 운영 등 ‘어린이 대상’ 사업 전개
- 사업기간: 2024. 01. ~ 2024. 12.
- 소요예산: 316,140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동의안은 시민들의 건강한 스포츠 여가문화 선용을 통한 체육진흥과 축구 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지역 축구 꿈나무 육성,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홍보 등 화성FC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4년도 사업 추진 시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시 재정에서 출연하는 것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출연예산액은 48억 9천 8백만원으로, 2023년 대비 1억 2천만원 감소하였으며, 계획한 사업내용이 「화성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재단의 사업범위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 인건비와 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의 큰 상승폭에 비해 사업비는 감소함에 따라, 화성FC의 홍보와 마케팅,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 구단 운영에 필요한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